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11.24.(화) 15:00 배포 2026.11.24(화) 08:00

「디지털자산업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추진

-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위원회(11.24) 및 업계·전문가 간담회(11.23) 개최 -

✓ 새로운 기회와 혁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구축을 위한 「디지털자산업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추진

❶ 디지털자산매매·중개·보관·운용업 및 디지털자산플랫폼운영자(거래소)로 업종 세분화

❷ 디지털지급토큰(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제도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은행권이 과반지분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발행을 허용하되, 기술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 가능

❸ 발행 전 충분한 정보 공시를 전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판매(ICO) 허용

❹ 디지털자산플랫폼운영자(거래소)의 공공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주식소유 제한 도입: 원칙 20%, 예외적 승인으로 34%(令)까지 허용. 최대 6년의 적용 유예기간

❺ 해킹·전산사고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전산안전성 의무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Ⅰ. 회의개요

금융위원회는 '26.11.24(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업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추진**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6.11.24.(화) 15: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디지털금융정책관, 재정경제부, 법무부, 과기정통부, 금감원 디지털 IT 부원장보,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법조·경제·소비자·IT보안 관련 민간 전문가 등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발표하는 **「디지털자산업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금유입**을 통한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지털자산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력**을 갖추어야 한다며, **혁신과 신뢰가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Ⅱ. 추진배경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규율체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❶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❷이용자 재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의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었다. 불법행위 및 이용자피해 방지에 초점을 둔 규율체계로 인해 산업 및 시장 측면에서의 접근이 미흡했고, 이로 인해 **거래소와 개인 투자자 중심 시장으로 고착화**되면서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육성에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국정과제***로 수립하고 **산업-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통합법 형태**의 **규율체계 마련**을 추진해왔다. 여러 차례의 가상자산위원회, 국회 등 다양한 세미나·토론회,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디지털자산업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하 '디지털자산법안')을 마련하였다.

* **[국정과제 48]**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 기반 마련
☞ '디지털자산 통합법(2단계법)'을 마련하여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 유도

한편, 이 위원장은 전날인 '26.11.23(월)에도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신 글로벌 시장 및 제도 동향을 점검하고, 디지털자산법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 추진 동향을 공유하였다.

참고 **금융위원장 주재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26.11.23)

[회의개요]

금융위원회는 **'26.11.23.(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디지털자산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자산법안은 **디지털자산 산업**과 **금융산업의 혁신**을 넘어 **국민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혁신**은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업계에 당부**하였다.

- **일시/장소**: '26.11.23.(월) 15: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디지털금융정책관, FIU 제도운영기획관,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DAXA, 주요 가상자산업자, 민간 전문가 등
- **논의사항**: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및 법·제도 동향,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주요 논의사항]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및 **법·제도 동향**에 대한 **발제** 후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동향**」에 대한 발표에서 현재 디지털자산 산업은 '**시장의 조정**'과 '**구조의 제도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산업의 중심이 결제와 금융 인프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최근 바이낸스 해킹 사건 등과 같은 **보안·운영리스크**가 향후 업계·시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 기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천창민** 서울과기대 교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법·제도 동향**」 발제를 통해 현재 각국은 산업을 포괄하는 **체계적 규칙**을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인가 등 **진입요건**을 마련하고, **증권-비증권**의 경계 설정, **스테이블코인**과 **지급결제** 법제와의 관계 등 **기존 금융법령과의 관계**도 정립해나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우리의 디지털자산법안 입법에도 각국의 제도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디지털자산법안의 진입규제, 영업행위규율,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이용자보호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민·관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데에 의견을 모았다.

Ⅲ. 법안 주요 내용

디지털자산법안은 ‘새로운 기회와 혁신(산업),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시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구축(이용자)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디지털자산 산업 : 기능별 세분화, 업무 단위 추가(Add-on) 방식

✔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라는 **포괄적 정의**를 보다 명확화하여 **법적 불확실성 해소할 필요"** ('24.11월 가상자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등)

✔ "'**가상자산사업자**'라는 단일 라이선스로는 다양한 비즈니스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곤란한 바, 業 세분화할 필요 ('25.1월 가상자산위원회 등)

가. 디지털자산업자 : 매매·중개·보관·운용업자 + 디지털자산플랫폼운영자

법안은 주요 입법례, 국내 시장현황 등을 감안하여, **매매·중개·보관·운용**의 **4개 디지털자산업자**와 **디지털자산플랫폼운영자**로 디지털자산업을 세분화하여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능별 규율체계**를 도입하여 **'동일 위험-동일 규제'** 원칙을 구현하고,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 영업 형태**도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디지털자산매매업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디지털자산의 매매·교환을 하는 자로, 해외에서는 주로 기관이용자 대상 장외거래 매매, 시장 유동성 공급자 중심으로 영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디지털자산중개업자**는 타인의 계산으로 디지털자산을 매매·교환하거나 그 중개를 하는 자로, 해외에서는 주로 기관이용자 대상 위탁매매, 상대매매 중개업무 등을 영위한다. **디지털자산보관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디지털자산 또는 그 통제수단('개인키')을 보관·관리하는 자로,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을 보관·관리하거나, 지분검증예치('스테이킹')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운용업자**는 이용자별 재산, 투자목적 등에 따라 디지털자산 운용일임 또는 거래자문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기관이용자 위주로 디지털자산 운용을 위임받아 전문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진입규제

디지털자산 거래에 직접 관여하거나,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디지털자산 매매업·중개업·보관업**에 대해서는 **인가제**를 적용하며, 금융회사에 준하여, **자기자본***,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임원 요건** 등의 인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용자 재산을 직접 보관·이전하지 않는 **디지털자산 운용업**은 **등록제**로 운용하고, 자기자본(5억원 이상), 전문인력 요건, 대주주·임원 요건 등을 갖추도록 하였다.

* 매매·중개·보관하는 디지털자산의 범위가 ▲모든 디지털자산인 경우 20억원 이상, ▲스테이블코인만 다루는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한편, 금융위는 **매매·중개·보관업자**의 인가를 모두 받고 적격 요건을 충족한 자를 **디지털자산플랫폼운영자**(거래소)로 지정할 수 있다. [상세내용❸]

[디지털자산업자] 4개 디지털자산업 인가/등록 + 플랫폼운영자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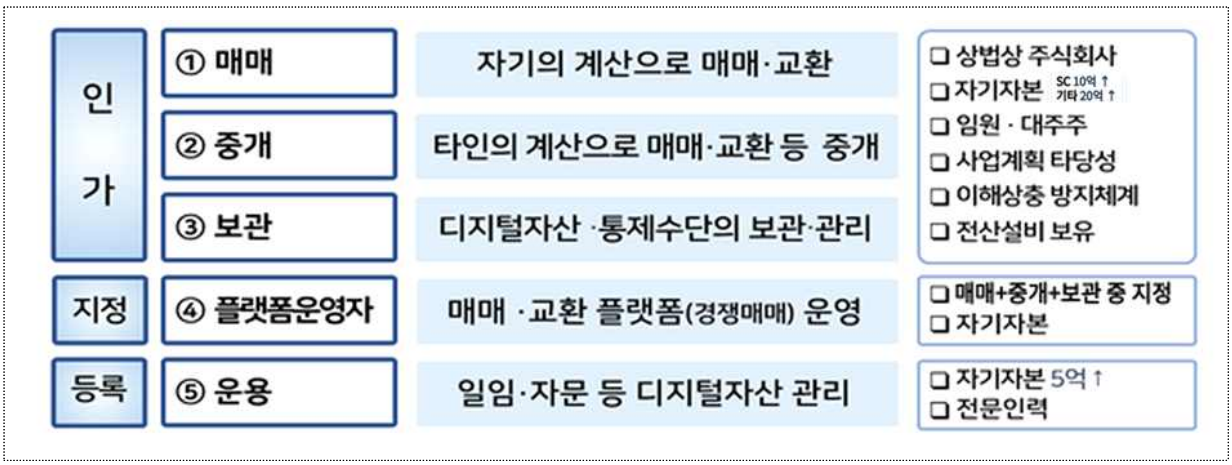

다. 영업행위 규제 및 감독·검사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에 준하여 **겸영·부수업무 신고, 업무위탁, 정보교류 차단 의무** 등이 부과된다. 겸영·부수업무 영위시 금융위에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디지털자산업과 관련된 필수적 업무는 제3자 위탁이 금지된다. 디지털자산업자는 이해상충의 식별·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부서간·업무간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이 금지되며, 매매거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대주주 변경승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 임명** 등의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임원 자격요건**이 적용되어, 금융관련법령 등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받은 경우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디지털자산업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가 발행한 디지털자산 등의 거래가 제한**되며, 대주주는 디지털자산업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영위하는 업무별 리스크, 디지털자산의 특성 등을 반영한 디지털자산업자의 **경영건전성 감독기준**도 마련된다. 금융권에 준하여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킹, 전산장애 등 **주요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디지털자산업자는 영업 종료·중단, 합병, 해산, 영업 양도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영업을 종료**(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폐지 **30일 전에 공고**하고, 이용자 재산의 이전조치 등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금융업권에 준하여 금융위원회의 업무·재산상황 검사,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과태료, 포괄적 조치명령권 등이 적용된다.

❷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지급토큰’)

가. 정의 및 발행업자 요건

스테이블코인(법률상 **‘디지털지급토큰’**으로 규정)은 **‘하나의 통화의 가치에 준거**하여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으로서 **주로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국내에서 디지털지급토큰의 발행·상환업무를 하려는 자(**디지털지급토큰 발행업자**)는 **주주구성 요건, 자기자본**(50억원 이상), 사업계획의 타당성, 인력·물적 설비, 대주주·임원 자격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 등을 갖추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주구성 요건은 **안정성·혁신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되, 도입 초기에는 안정성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단, **핀테크·기술기업** 등도 **'최대주주'로서 참여** 가능토록 하여 디지털지급토큰의 발행·유통에 있어 혁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본국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충분한 감독**을 받는 외국 디지털지급토큰발행업자는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고 **영업기금**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하고 외국 디지털지급토큰에 대하여 금융위에 **신고**하면 국내 발행·상환이 가능하다.

나. 발행 및 상환

디지털지급토큰발행업자는 발행량·발행한도, 준비자산 관리, 상환업무 등에 관한 '**발행계획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디지털지급토큰은 **금전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발행되며, **보유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할 수 없다. 발행계획이 승인·신고되지 않은 디지털지급토큰에 대해서는 **플랫폼운영자의 거래지원**(상장), **디지털자산업자의 매매·중개·보관** 등의 **취급이 금지**된다.

디지털지급토큰발행업자는 보유자의 상환청구에 대해 지체 없이 동일한 가치의 금전으로 상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발행업자는 은행 등 준비자산 관리기관에 **발행잔액의 100% 이상**을 **예치·신탁**하여야 한다. 준비자산은 (가)**압류·상계 등이 금지(도산절연)**되며, 준비자산관리기관은 **▲발행업자의 인가취소·파산** 및 **▲해킹 등**으로 **정상적 발행·상환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준비자산**을 **보유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여 이용자 재산을 두텁게 보호한다.

다. 중요 디지털지급토큰

금융위는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발행잔액 1조원 이상**의 디지털지급토큰 중에서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을 **지정**할 수 있다. 중요 디지털지급토큰 지정시, 발행업자에 대해 **자기자본 추가 적립, 준비자산 유동성 관리 강화**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며, 한국은행은 중요 디지털지급토큰발행업자에 대해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 EU, 美도 중요 스테이블코인을 지정하고 강화된 건전성 규제 또는 연방 규제 적용
: (EU) 50억 유로 이상, (美) 100억불 이상

❸ 디지털자산 시장 : 시장의 효율성·공정성·책임성 제고

✔ [거래지원 직후 가격 급등락 사례] A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거래소 거래지원 직후 공급물량 부족으로 기준가격 대비 4.2배 급등 후 8시간 만에 가격 안정화('26.9월)

✔ [우회발행 후 국내유통 사례] 플랫폼 기업 B社가 국내 ICO 금지정책을 우회하여 C국에 별도 재단 설립 후 디지털자산을 발행하여 국내 거래소를 통해 유통('25.5월)

가. 디지털자산플랫폼운영자 (거래소)

디지털자산매매·중개·보관업 인가를 모두 받은 자로, **충분한 자기자본, 시장운영능력*** 등을 갖춘 자를 **디지털자산플랫폼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 거래지원·시장감시 등 업무 기준 마련,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 등

한편, 디지털자산시장의 핵심 유통 인프라인 디지털자산플랫폼운영자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분산 기준**을 도입한다. **자본시장** ATS에 준하여 **주식소유 제한(20%)**을 도입하되, **금융위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3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통해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하는 초과 소유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존 거래소 등의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지정 이후 3년간 적용이 유예**되며, 중소형 거래소 등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3년** 범위에서 유예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현재 자율규제로 규율 중인 **매매체결, 거래지원(상장), 이상거래 감시** 등 거래소의 업무 기능을 **공적 규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플랫폼운영자에게 **업무규정 마련 의무**를 부과하며, 공적 기능을 감안하여 법령에서 주요 내용은 직접 규율한다.

나. 발행 및 유통공시 규율

충분한 정보 공시를 전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판매(ICO)가 허용**된다. 디지털자산을 **취득권유***(판매)하려는 발행인등**(또는 주선하는 매매·중개업자)은 **'디지털자산백서'**를 작성하여 취득권유 전에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백서는 '증권신고서'와 유사하게, 취득권유자, 자금 사용처, 발행량, 프로젝트, 리스크 등을 기재하며, 금융위는 중요사항 누락 등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수리** 및 **공시** 후, **숙의기간**을 거쳐 발행인 등의 **취득권유가 허용**된다.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디지털자산의 취득 또는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 디지털자산을 생성한 발행인 및 그 발행·개발·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디지털자산플랫폼운영자는 특정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상장)하려는 경우 발행인, 발행량, 프로젝트, 리스크 등을 기재한 **'거래지원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에 제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해킹·전산장애, 발행·유통량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은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백서 및 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거짓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공시 의무 주체(임원 포함)에 대하여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며, 공시에 대한 금융위의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권**, 부실공시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의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❹ 이용자 보호 강화 :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구축

✔[해킹] D거래소 지갑에서 이용자가 보관한 디지털자산이 외부지갑으로 무단 유출('25.11월), E거래소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및 일부 디지털자산 유출('26.10월) 등

✔[불공정거래] API 이용한 허수 주문 시세조종 사건, 대규모 자금 동원한 '대형고래' 투자자의 시세조종 사건, SNS에 허위정보를 유포한 부정거래 사례 등

가. 영업행위 규제 전반 정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약관·광고규제** 등을 디지털자산업자에게도 도입한다. 이에 더하여 **이용자 재산 상시점검** 및 **외부기관**(회계법인)의 **주기적 회계감사** 등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여 **이용자 자산**을 분별관리토록 하고, 분별관리된 이용자 자산에 대한 **상계·압류 금지** 등 **도산절연 근거도 마련**하였다.

디지털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디지털자산업자에게 **금융회사 수준**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시 디지털자산업자는 이용자에 대해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금융위**는 **전산 안전성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최대 매출액의 10%)을 부과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거래 관련 시설을 해킹하여 자산 등을 탈취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 예) 인력·조직 확보, 전산설비 등 규제, 해킹 방지대책 등 정보보호 조치, 이용자 인증수단 관리, 비상대책 수립, 업무 지속성 확보 등

나. 불공정거래 규제 보완

'24.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운영해 온 **'가상자산조사심의회'**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서 제기된 보완 필요 사항들도 정비한다. **불공정거래 적용 범위**를 **거래지원 중인 디지털자산** 뿐만 아니라, **거래지원 심사 중인 디지털자산**까지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디지털자산업자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까지 포함하여 규제 공백을 보완한다.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도 매매 뿐 아니라 교환 행위까지 시세조종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원화거래소 외 코인거래소**에서의 불공정거래 규율도 가능해진다.

또한,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법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고 혐의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관련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 의결을 통한 **지급정지**(계정·계좌 동결) 또는 **디지털자산거래 금지** 등의 조치근거를 마련한다. 불공정거래 관련 범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범죄 증언시 형벌·과징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 **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Ⅳ.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오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향후 진행될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별첨 1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2 : 「디지털자산업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책임자	과 장	서나윤	(02-2100-1650)
		담당자	사무관	유원규	(02-2100-1651)
		담당자	사무관	유은지	(02-2100-1658)
		담당자	사무관	김예빈	(02-2100-1657)
담당 부서 <공동>	재정경제부 자금시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창기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이하준	(hajlee@korea.kr)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책임자	팀 장	고경철	(02-750-6635)
		담당자	과 장	김재환	(02-750-6648)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책임자	국 장	최강석	(02-3145-8160)
		담당자	팀 장	이주영	(02-3145-816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